공익신고자 보호제도란?

-공익신고자등(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)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**비밀보장**, **불이익보호조치**, **신변보호조치** 등을 통하여 보호하는 제도

♣보호조치 요구 방법

전화 02-360-3761/우편(120-705)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/팩스 02-360-3567

식품의약품안전처

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(우. 28159)
TEL. 1577-125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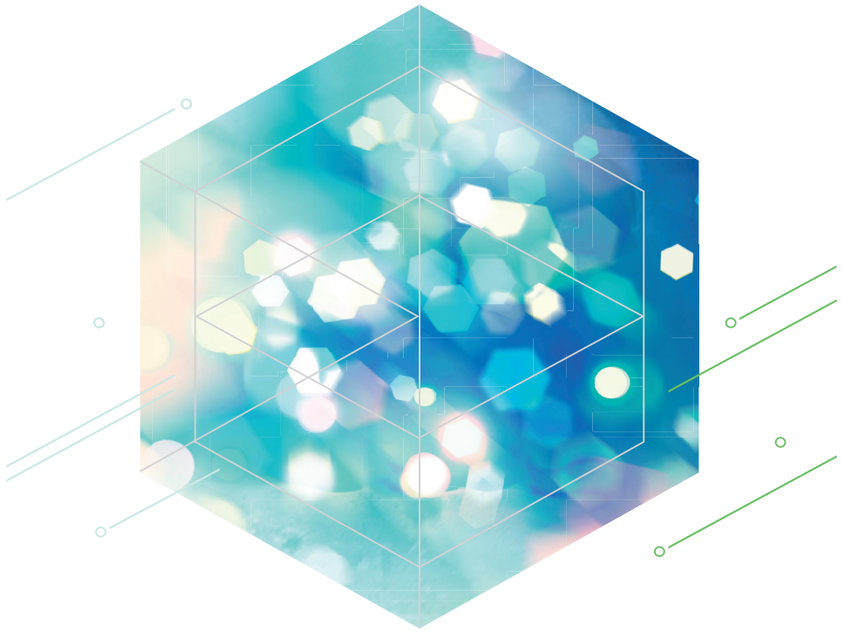
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물품 정책설명회

식품의약품안전처·대한화장품협회

청렴韓세상
Korea, a country of integrity

화장비누 등 화장품 전환물품 정책설명회

- 일 시 : 2019. 6. 25. (화)
- 장 소 :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
- 주 최 : 식품의약품안전처
- 주 관 : (사)대한화장품협회



주 최 : 식품의약품안전처 주 관 : 대한화장품협회